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- 1) 시설과 이용자(입소자)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2) 장기 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”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3)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.
 - ① 계약당사자
 - ② 계약기간
 -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-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4)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5)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.

2. 계약기간

- 1)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2)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3)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- 4)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
 - 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시
 -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
- 5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- 6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구분		금액(원/%)	내역
장기요양보험 급여항목	공단지원금	총액의 80%	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%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
	본인부담금	총액의 20%	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, 경감대상자는 60% 또는 40%경감 될 수 있음
비급여항목	식재료비	000원/1식	1일 000원 (1일3식)
	간식	000원/1식	1일 000원 (1일 2식)
	상 급 침 실 이 용료	2인실	일 30,000원
	이미용료	무료	

4.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(입소자)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1)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·의원 입원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-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④ 식사제공 및 조연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
-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- ⑥ 기타 “을”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2) 입소자의 의무

- ① 월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부 의무
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3) 보호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
4) 입소자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. 또한 비밀 보장 받을 권리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
-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이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
-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
-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
-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
- ⑧ 본 시설에서 생활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
5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-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6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③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④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⑤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
-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⑩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- ⑪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⑫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5. 계약의 해제

- 1)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- 2) 다음 각 호의 여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⑥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⑦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 - ⑨ 어르신의 건강과 건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6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- 1)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- 2)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3)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- 4)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

여 안내한다.

7. 이용료 변경 및 절차

- 1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 -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 -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 -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
- 2)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
 -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
 -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
 - ③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
 -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8. 이용료 납부

- 1)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2)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- 3)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(전산시스템 사용 시 적용)

9. 이용료 반환

시설은 입소자가 퇴소할 경우 월 퇴소 당일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금을 수취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.